



2024년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법정의무교육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의의

1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제289조(인신매매) ‘인신매매’ 처벌 조항 마련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2021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2023. 1. 1)

-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인신매매등” 개념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의 팔레르모 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 반영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의의

구분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방지법
인신매매 정의	<p>제3조 용어의 사용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p> <p>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한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p>	<p>제2조(정의)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p> <p>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p>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의의

- ☑ 인신매매방지법은 팔레르모 의정서처럼 ‘인신매매등’을 ‘행위’, ‘수단’, ‘목적’의 3가지 요건으로 정의

목적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수단	<p>사람에게</p> <p>가.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p> <p>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박한 상태를 이용</p> <p>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강제적인 수단</p>
행위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인수하는 일련의 행위

- ☑ 인신매매방지법과 팔레르모 의정서의 비교

① 팔레르모 의정서의 제3조 나목과 인신매매방지법 제4조 제1항은 피해자가 설령 피해에 동의하였더라도 피해로 인정

② 팔레르모 의정서의 제3조 다목과 라목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사기, 기만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아도 인신매매와 관련된 행위와 목적이 이뤄질 시 피해자로 인정

- ▶ 인신매매방지법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신매매등으로 인정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적시된 아동·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적시된 장애인

|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의의

구분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방지법
피해자의 동의여부	나. 본조 가목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목에 규정된 <u>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u>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u>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특이사항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u>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u> 는 그것이 이 조 가목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u>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u>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u>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u>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u>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정의

1 인신매매등피해자 정의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는다.

1.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 인신매매등 피해 성립 요건 중 수단이 갖춰지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2호(인신매매등범죄) 각 목의 피해자

☑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심의·판정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경우나,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해당되어야 함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 및 법정교육

1 인신매매등 피해 발견 시 신고/상담전화와 신고의무

-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및 상담 전화
 - ▶ 수사기관 신고전화 ☎ 112(24시간)
 -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상담전화 ☎ 1600-8248(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 신고의무자(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
 - ▶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에 명시된 기관의 종사자
 - ▶ 신고의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방지법 제5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 시설〉

인신매매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시설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 및 법정교육

인신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 · 복지시설 · 수용시설 · 보호시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숙인복지법	선원법
노숙인 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고용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112),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1600-8248)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 및 법정교육

2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 및 관련종사자 법정교육

☑ 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 내용 :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범죄 주요 내용,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방법,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등
- 교육 방법 : 매년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 교육 대상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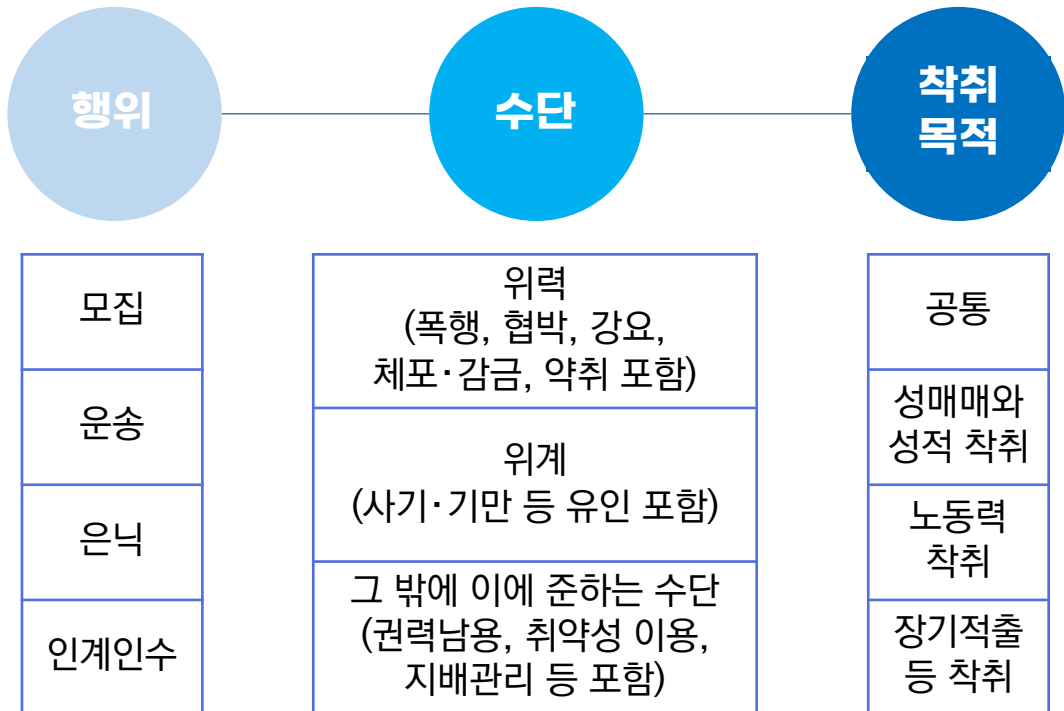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

1 피해자 식별지표란?

- ✓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명시
- ✓ 팔레르모 의정서 제3조에 명시된 행위-수단-목적으로 구성된 인신매매의 정의는 다양한 국가들의 식별지표에 활용
 - ▶ 여성가족부 고시 <피해자 식별지표>도, 팔레르모 의정서의 행위-수단-착취 목적 순으로 구성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 기준 및 방법

1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전 필요한 절차

- ☑ <피해자 식별지표> 관련 교육으로 인신매매등 정의와 피해자 식별지표 숙지
- ☑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계적인 상황 등 피해자의 사회적 조건 및 배경 이해하기
 - ☐ 상담 과정에서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등을 거부할 수 있음, 피해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엄격한 감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며, 또한 가해자들이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 ▶ 이처럼 인신매매등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정된 정보만을 알게 되고, 지원기관이나 지원자를 신뢰하기 어려움
 - ☐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감시나 통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음
 - ▶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자국에서 이미 중개업자들과 채무관계를 맺은 상태로 입국 또는 밀입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 혹은 길들이기를 통해 성적 착취 발생 가능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은 이러한 통제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음
- ☑ 피해자와 상담 시 비밀보장 원칙 등 충분한 상담 절차 설명하기
 - ☐ 피해자의 비밀보장은 중요한 원칙이며, 상담 과정 중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 상담 내용과 정보 수집 이유, 목적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후 지원 내용 및 연계 상황 설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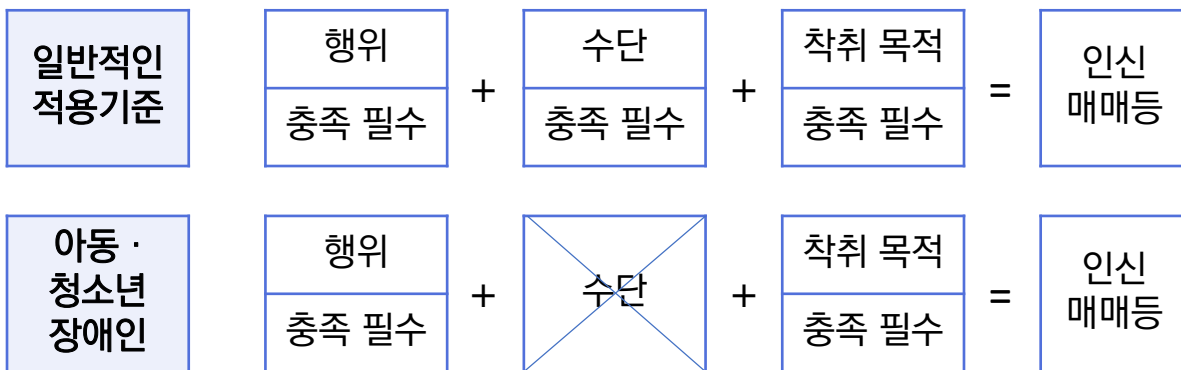
피해자 식별지표 적용 기준 및 방법

2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원칙

☑ <피해자 식별지표>를 통해 피해 여부 파악하기

- ☐ 피해자 식별지표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해당 항목에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피해자와 상담 후 상담내용을 지표에 적용하여 확인 필요
- ☐ 인신매매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착취가 실현될 필요는 없고, 인신매매등 행위자에게 착취의 목적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
 - 다만, 인신매매등 행위자가 실제로 착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는 이미 착취를 경험한 피해자들과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 식별지표>의 착취 목적과 행위, 수단 요건을 연결하여 파악 필요

☑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용 기준 ※ 요건당 1개 이상 충족 필요



|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1 피해자 식별지표 : 행위

항목	요소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했다.	모집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하였다.	운송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다.	은닉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되었다.	인계 인수

☑ 모집

- ☑ 모집자가 피해자와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를 인신매매 하는 경우도 발생
- ☑ 모집은 국경을 넘어 발생 하기도 함, 이때 인신매매등 피해자 모집은 출신국뿐만 아니라 경유국, 최종 종착국 발생 가능
- ☑ 최종 종착국에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경우 출신국으로 직원을 보내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출신국에 있는 인신매매등 중간업체를 통해 모집

☑ 운송

- ☑ 운송은 모집자가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인수받아 운송하여 다른 인신매매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경우와
- ☑ 모집자와 운송자가 다르거나, 인수를 받을 때는 없었던 '착취 목적'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운송 중에 생길 수 있음
- ☑ 모집자와 운송자가 달라, 운송만 수행하는 운송자는 피해자가 착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음, 중요한 부분은 운송자가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인신매매등 행위인 '운송' 성립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 은닉

- ☐ 은닉은 피해자를 범죄자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출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숙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조자나 지원자 혹은 국가로부터 숨기는 행위를 모두 포괄
- ☐ 은닉은 착취 전 뿐만 아니라 착취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착취가 연달아 일어나는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음

예) 성매매와 성적 착취 피해자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성구매자가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착취가 발생하는 장소와 은닉의 장소가 다르지만, 이 역시 은닉을 통해 인신매매등 피해 발생

☑ 인계와 인수

- ☐ 모집을 한 사람이 운송도 관여할 수 있음, 모집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인수받은 후 운송하여, 다른 인신매매등 행위자에게 인계하기도 함. 이처럼 인계·인수는 모집과 연결된 경우 많음

2 피해자 식별지표 : 수단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일 경우 수단 요건 불필요

항목	요소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되었다.	위력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 포함)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위계 (사기·기만 등 유인 포함)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권력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등 포함)

|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 위력

- ☐ 사전적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뜻함, 강제력 사용의 한 형태로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압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
 - 강요(형법 제32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며,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 약취(형법 제287조, 제290조) : 폭력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로 옮기는 것

☑ 위계

-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 사기 :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즉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
 - 기만 :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속여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
 - 유인 :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사람을 꺾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대법원 1996.2.27. 선고 95도2980 판결)
- ※ 기망 : 사실을 은폐하는 등으로 상대방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 ☐ 권력남용 : 권력을 가진 개인, 그룹, 혹은 기관이 그 권력을 부당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즉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위력의 행사를 뜻함
- ☐ 궁박한 상태(팔레르모 의정서 ‘취약한 지위’) : 궁박한 상태는 취약한 지위보다 좁은 개념
 - 궁박한 상태 :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대법원 2002.10.22.선고 2002다38927 판결)
 - 취약한 지위 : 취약한 지위에 놓인 피해자는 다른 차선의 선택지가 없어 인신매매등 행위자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따를 수밖에 없음
(예시) 고령, 장애 여부, 낮은 교육 수준, 성별, 빈곤, 장기적 실업, 이주로 인해 주변 네트워크가 없고 언어도 서툰 경우, 알코올중독, 착취자와의 정서적 결속 등

☐ 수단 예시

항목	요소
사업장에서 부당한 규칙을 이용하여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경제적 통제 수단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증빙서류 준비, 비자 발급, 이동경비 제공, 숙박, 이탈보증금 등)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했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고용주, 기획사 관계인, 중개인, 사업장 관계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하였거나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물리적 통제 수단
계약 조건에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일을 시켰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업소(성매매/유흥업소/마사지업소/클럽 등)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했다.	
숙소에 고용주 및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감시를 당했다.	

|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항목	요소
음식, 물, 생필품 등을 제한받았고 의료서비스를 제약받았다.	물리적 통제 수단
일하던 곳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 문, 전자감시와 같은 보안장치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된 상태로 감금당했다.	
외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과 동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와의 소통(서신교환, 전화, 휴대전화 등)도 허락이 필요했다.	
여권, 신분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 못하거나 신분증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정서적 통제 수단
국내에서 내쫓거나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겠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성매매,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을 저질렀으므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업소(성매매업소,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클럽 등)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	
본인이 현재 있는 곳의 주소 및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용 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피해자 식별지표 세부 내용

3 피해자 식별지표 : 착취 목적

항목	요소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증명서류 준비, 비자발급, 이동경비 제공, 숙박, 이탈보증금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구실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했다.	공통
자유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았다.	
성매매로 단속되거나 성적 착취를 당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
적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수당, 근로 및 휴게시간, 숙식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노동력 착취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당사자가 장기 적출을 주장하거나 신체의 흔적이나 상처로 인해 불법 장기이식이 의심된다.	장기적출 등 착취

☑ 공통 요소 : ‘피해자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제약’

☑ 성매매와 성적 착취 특성

- ☑ 성매매와 성적 착취는 성폭력을 동반하기도 함, 이때 성폭력 주체는 반드시 고용주일 필요가 없으며, 성폭력 등의 성적 착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착취 목적 인정

☑ 노동력 착취 특성

- ☑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적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매상 할당량, 벌금제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해당
- ☑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하거나 고용계약서상 사업장보다 노동 조건이 열악한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육체 및 언어폭력을 가하는 일들도 해당

☑ 장기적출 등 착취 등 특성

- ☑ 강제 장기적출 :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
- ☑ 불법 장기매매 : 피해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장기를 매입하는 것
- ☑ 해외 원정 장기 이식 : 중국이나 인도 등의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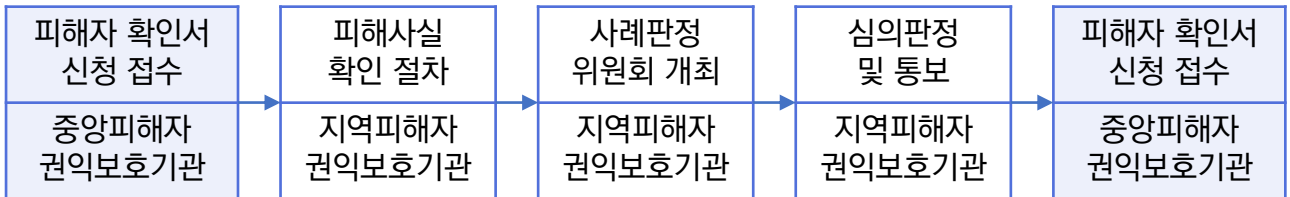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란?

1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신청 대상

- ☑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 ☑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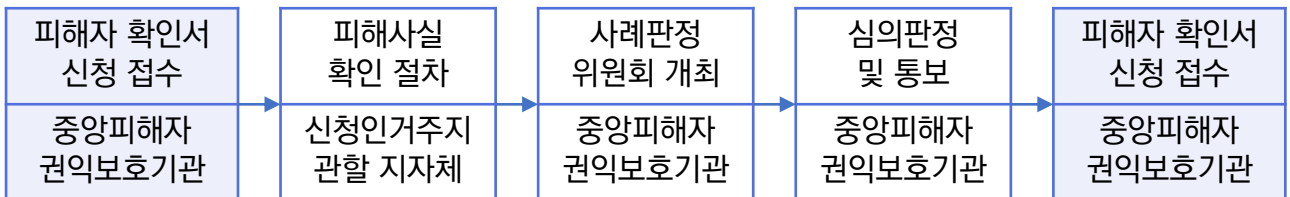
-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 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 ②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현장조사 진행
- ③ 현장조사 결과 및 신청서를 기반으로 지역권익보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 ④ 피해자 확인서 심의·판정결과를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통보
- ⑤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피해자 확인서 발급

- ☑ 한시적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에서 피해사실 확인 현장조사 진행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p>제 6조 (피해자의 권리)</p>	<p>인신매매등 피해자의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 보장 및 법률 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p>제15조 제1항 (인신매매등피해 자권익보호기관 의 설치)</p>	<p>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 정책 개발 및 보급 ·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협력체계 및 교류 · 신고접수 등
<p>제15조 제2항 (인신매매등피해 자권익보호기관 의 설치)</p>	<p>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권익을 위해 인신매매등 신고접수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상담 및 사후관리 ·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운영
<p>제3장 인신매매등범죄 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p>	<p>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범죄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방어 및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가능</p> <p>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p>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 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p>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음</p> <p>※ 인신매매등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p>
	<p>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필요 ·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함
	<p>제20조 (심리의 비공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p>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 자에 대한 신고 · 보호 · 지원	<p>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필요시 의료기관 인도가 이루어져야 함.</p>
	<p>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p>
	<p>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함. 채권양도 및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p>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p>제4장 인신매매등피해 자에 대한 신고 · 보호 · 지원</p>	<p>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p>
	<p>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할 수 있음</p>
	<p>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상담 지원할 수 있음</p>
	<p>제28조(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p>
	<p>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p>
	<p>제30조(생계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p>
	<p>제31조(귀국지원) 외국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p>

|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p>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인신매매방지법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p>
	<p>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름</p>
	<p>「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p> <p>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p>
	<p>「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p>

|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장애인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및 예방 ② 피해장애인 쉼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 등 지원 ② 자활지원센터 · 취업 및 기술교육 진행, 정보제공 ③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성매매 예방 홍보·교육 진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구조 ② 상담 및 심리지원 ③ 학업 및 진로 지원 ④ 법률 및 의료지원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 폭력 피해 상담, 고용 및 체류 상담, 무료법률 및 의료지원 ③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창업 능력개발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 직업교육 훈련,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
강제근로 등 노동력 착취 관련 지원제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상담

인신매매등 범죄의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지원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